

- **【적용대상】**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
 - **【적용시기】** '23.6.1.~별도 개정 시까지
- ※ 감염 상황 및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

-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-

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

[제10판]

2023. 5. 26.



교육부
중앙방역대책본부·중앙사고수습본부

주요 개정내용

주요내용	제 9-1판	제 10판
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	격리 기간(7일 의무)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	격리 권고 기간(5일) 동안 등교 중지 권고
자가진단 앱 참여	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※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	사용 폐지
방역 물품	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	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(기 배포된 방역물품 비축기준 참고)
소독·환기	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,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	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·환기
▣ 외부인 관리, 유증상자 발생시 관리는 세부내용 소폭 개정 : (외부인 관리) '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' → 삭제 (유증상자 발생시) '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' → 삭제 (바로 보호자 연락 및 진료·검사) ▣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-1판과 동일하게 적용 : 일시적 관찰실 유지, 급식실·기숙사 관리, 개인 방역수칙 등		

대응 방향

- 정부의 **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**(‘심각’ → ‘경계’) 및 **‘온전한 일상 회복’ 전환**(6.1~) 기조에 맞춰 **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**
 - ※ 방역당국의 지침을 기본 적용하면서 현 상황에 맞게 학교 방역 지침 완화

학교 일상관리

1. 학교 환경관리

- **(방역물품) 교육청이 감염병 위기 단계·상황 고려 최소 기준 수량** 비치
 - * ‘감염병 예방·위기대응 매뉴얼’ 제시 수준 비축·유지
- **(방역인력)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·운영**
- **(일시적 관찰실) 유증상자 대기·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유지**
 - ※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유지(1층 등 신속 귀가 가능 장소에 마련)
- **(소독·환기) 빈번 접촉 장소, 다수 밀집 장소 등에 대한 소독·환기***는 **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, 감염 위험요인 관리**
 - *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’, ‘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’ 참고
 - ※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
- **(급식실) 급식시설·기구 청소·소독,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,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,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*** 및 **급식 위생관리 철저**
 - * 급식종사자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
- **(기숙사) 개인 방역 준수 및 환기·소독 등 철저,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체**
 - ※ 유증상자가 ‘음성’ 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(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)

2. 개인 방역관리

- **(방역수칙)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**(방대본 발표) **실천 및 교육·홍보 지속**
 -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, 손 씻기, 기침 예절 등 **감염병 예방 교육, 가정과 연계한 생활 수칙** 홍보 등 지속 실시
 - ※ 방역 강화 등의 사유로 학교 내 정수기(음용) 사용 또는 양치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 금지
- **(마스크 착용) 원칙적으로 미착용,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**(‘참고’ 별첨)
 - ※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'23.1.30.(월)부터 해제(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)
 - ※ 학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학교 차원에서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

상황 발생 시 관리

- **유증상자 발생시**
 - **(가정)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** 신속하게 검사* 또는 진료
 - * 자가검사(→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), 의료기관 등 방문
 - **(학교)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** 보호자에게 연락 및 **진료·검사 안내**
 - ※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(권장)
- **확진자 발생시**
 - **(학교)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**
 - ※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
 - **(학생·교직원)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, 학생·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**
 - ※ (근거)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(등교중지), 방역당국의 ‘코로나19 대응 지침’
 - ※ (방역당국 지침)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

참고1

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(학교 적용 기준)

- 방역지침에 따라, 현재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('23.1.30.~)되어 있으나,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됨

방역당국 기준	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(학교·학원 적용)
① 코로나19 확진자 이거나,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했던 경우	좌동
② 코로나19 의심 증상 *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하는 경우 *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	좌동
③ 코로나19 고위험군 *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 하는 경우 *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	좌동
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	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(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)되어 있는 경우
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 가 많은 경우	《사례별 권고 기준》 1. 교실,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. 실내체육관 관중석 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(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)에서 응원 합성·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 가 많은 경우 3.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·졸업식 등에서 교가·애국가 등을 합창 하는 경우 4.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 에서 비말 생성행위 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(학교장 등)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※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9판)」 참고

참고2

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(제10판) 관련 FAQ

【문 1】 학교방역지침의 주요 변경 내용은?

- **교육분야도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** 다음 사항을 완화하였음

현행 주요 내용	수정내용
- 확진시 7일 의무 격리 - 소독 1일 1회이상, 환기 1일 3회이상 - 유증상시 자가진단앱 참여 - 방역인력 지원(재해특교)	- 확진시 5일 격리 권고 -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환기 -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 - 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지원

【문 2】 확진자가 격리권고(5일) 기간중에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, 학교의 조치는?

- **학생건강 회복이 우선**이므로 방역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는 등교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함
-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,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 최소화 및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할 것임

【문 3】 5일 격리 권고 준수로 인한 확진 학생의 결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?

-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,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은(5일) **출석인정결석** 처리됨

※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·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그 결과*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됨

* 검사 결과서, 소견서, 진단서 등 증빙자료

< 출결·평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>

	변경 전	변경 후
출결	○ 격리의무기간(7일)의 결석은 출석인정	○ 격리권고기간(5일)의 결석은 출석인정
학생 평가	○ 격리의무 기간 중 분리교실에서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'외출허용 승인' 필요	○ 분리교실 운영은 지속하되, 외출 허용 승인 절차 폐지
가정 학습	○ (초·중등) '2023학년도 초·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('23.1.11.)' 내용 유지 ※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하되, 허용일수는 지역별 감염 상황, 지역·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·운영 ○ (유치원)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'심각, 경계'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'가정학습'을 포함 유지('20.~), 유아학비 지원 가능(2023년 유아학비지원계획 참고)	

【문 4】 코로나 확진 학생들의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?

- ☐ 교내 시험의 경우,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학교별로 마련되는 **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음**
 -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며, 일반학생의 감염 불안감 완화 차원에서 분리고사실을 지속 운영할 예정임
 - 아울러, 확진 학생이 **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** 현재와 같이 기존 성적에 준하는 **인정점수***가 부여됨
- * 시도 교육청 지침 및 학교 규정에 따른 점수로서 기존에 응시한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

【문 5】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‘경계’로 하향 조정되어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은 포함되는지?

- 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 단계인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이 포함(‘20.5월~)되어 왔으며 ‘경계’로 하향 되어도 동일하게 가정 학습은 포함됨
- ☐ 다만, 2023학년도 학사운영 안내 시(‘23.1월)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권고를 폐지하였고, 지역별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운영중임

< 참고 : 2023학년도 초·중등 학사운영 안내(‘23.1.11.)>

- **(가정학습)**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* 심각·경계 시 **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‘가정학습’을 포함**
- **(허용일수)**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**‘57일 내외 유지 권고’는 폐지**하고, 기존(‘21.8월 이전)과 동일하게 지역별 감염 상황, 지역·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**시도교육청이 운영중임**